

# [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제4차) ]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6월 18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9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6월 26일(제1차 총무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16호

### 2. 제안이유

- 07년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기관이 협소하고, 노후된 시설을 신축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- 우리 군과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거창 관문 제작·설치를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 및 인지도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

### 3. 주요골자

- 취득재산의 표시

(단위 : m<sup>2</sup>/천원)

재산명	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물건및지목	수량(m <sup>2</sup> )	예정금액	비고
북상보건지소	당초	소계	북상면 갈계리 일원	계		577,608	금액 : 증170,000 (29.4%) 면적 : 증478m <sup>2</sup> (48%)
		토지		토지	990	60,000	
		건물		건물	335	517,608	
	변경	소계	북상면 갈계리 1433-4,1390-3	계		<b>747,608</b>	
		토지		토지	1,468	110,000	
		건물		건물	344	637,608	

구송 보건 진료소	당초	소계	고제면 봉산리 일원	계		245,753	금액 : 증35,000 (14.2%) 면적 : 증305㎡ (37.1%)
		토지		토지	820	38,000	
		건물		건물	116	207,753	
	변경	소계	고제면 봉산리 587-4, 587-13	계		<b>280,753</b>	
		토지		토지	1,125	24,000	
		건물		건물	139	256,753	
가조 보건 지소	당초	소계	가조면 마상리 345-3	계		527,608	금액 : 증173,000 (32.8%) 면적 : 증330㎡
		토지		토지			
		건물		건물	351	527,608	
	변경	소계	가조면 마상리 342-7	계		<b>700,608</b>	
		토지		토지	330	133,000	
		건물		건물	344	567,608	

※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 : 면적 또는 가격 30%이상 증감시 재의결대상

(단위 : 천원)

재산명	재산 종별	재산 소재지	물건및 지 목	수량(㎡)	예정금액	비고
거창화강석 관문 조형물	소계	거창읍 대평리 검문소 일원	계		1,000,000	
	조형물		화강석 조형물	22m(L) × 10m(H)	1,000,000	

#### ○ 처분재산의 표시

(단위 : ㎡/천원)

구 분	재산 종별	재산소재지	물건및 지 목	면 적	예정금액 (추정가액)	비 고
처 분		해 당 없 음				

#### 4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안 상 룡)

- 동 사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3건(북상보건지소·구송보건진료소·가조보건지소의 이전신축)과 경제과 소관 거창화강석 관문 조형물 설치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임.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 대상을 간단히 살펴보면.
  - 1건의 예정가격이 시군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취득 (처분 및 건물의 신증축, 공작물 설치 포함)하는 경우이며,
  - 토지의 경우에는 1,000m<sup>2</sup> 이상일 때
  -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%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.

## ①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

- 북상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의 사유로 이전신축이 필요하여 2006. 11. 14. 제133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, 관계법인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임.
- 당초 토지는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북상면 갈계리 일원으로 계획하였으나, 이번에 대상지가 북상면 갈계리 1390-3, 1433-4 번지로 확정됨에 따라 면적이 48.3%(당초 990m<sup>2</sup> ⇒ 변경1,468m<sup>2</sup>)

증가 되고, 예정가격이 29.4%(당초 577,608천원 ⇒ 변경 747,608천원)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음

- 총 소요사업 747,608천원(국비 318,405천원, 도비 159,203천원 군비 270,000천원)산출에 대하여 살펴보면
  - 재정자립도 15%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전액 국·도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,
  - 보건지소 1개소의 사업지원내역은 477,608천원(국비 318,405+도비 159,203) 이며, 나머지 추가소요 사업비 270,000천원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면적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 군비 부족액 170,000천원을 2007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② 고제면 구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

- 고제면 구송 보건진료소는 사업규모와 예정가격이 시군의 경우 5억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토지의 면적이 1,000m<sup>2</sup>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아니었으나 사업대상지 면적이 당초 820m<sup>2</sup>→ 1,125m<sup>2</sup>로 확정되어 관계법인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임.
- 동 사업의 규모는 토지취득이 1,125m<sup>2</sup>, 건물신축이 139m<sup>2</sup>로서 총 소요사업비 280,753천원(국비 110,502천원, 도비 55,251천원 군비 115,000천원) 중 군비 부족액 35,000천원을 2007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③ 가조면 보건지소 신축

- 가조면 보건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천정누수 등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협소 등 진료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유로 2006. 8. 30일 제131회 임시회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을 승인 받았으나,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임
  - 당초 대상지는 현부지를 철거하고 보건복지부의 2007년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지침의 표준시설 면적(336㎡)에 해당되는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건폐율(60%)이 맞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대상부지를 물색 하던중 인근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 가조면 마상리 342-7, 342-8번지로 확정됨에 따라 면적(330㎡)이 추가(마상리 342-7번지)되고, 예정가격(당초 567,608천원 ⇒ 변경 700,608천원)이 32.8%증가되었으며,
  - 가조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700,608천원 중 국비 318,405천원, 도비 159,203천원 군비 223,000천원 중 군비 부족액 173,000천원을 2007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▶ 상기의 사업들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·개선 등을 통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,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됨.

#### 4 거창 화강석 조형물 관문 설치

- 2007년 5월 29일 주례회의시 보고된 계획에 따라 거창화강석 조형물 관문 설치를 위하여 관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 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(건물의 경우: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)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.
- 동 사안이 제출된 배경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중인 교통의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4억원(균특2억, 군비2억)으로 상징탑 설치 계획을 추진하던 중
  - 2006. 11. 30일 2006년도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관문 설치에 대한 제안을 받고,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
  - 2007년 3월 21일 지역혁신협의회에 안을 상정하여 관문설치에 대한 방침안을 결정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.
- 동 사업의 규모는 길이 22m, 높이 10m의 규모로서 총 소요사업비 1,000,000천원(국비 300,000천원, 균특 220,000천원, 군비 480,000천원) 중 군비 부족액 280,000천원을 2007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
  - 본사업이 완료되면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외 경쟁력 향상 및 인지도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
-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화강석산업 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거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화강석 조형물로 제작·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으나,
- 동 사업의 설치 예정지는 88고속국도 확장사업의 영향권에 있으며 거창 IC 예정지가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주 동선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88고속국도 관리청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위치 선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